

자동차보험금 청구서

1. 차량정보

차량번호	
차량명	
피보험자(소유)자명	
연락처	

2. 운전자사항

성명		주민번호	
연락처		피보험자(소유)자와 관계	
면허번호		면허종별	
적성검사만료	년 월 일까지	사고당시(정상, 정지, 취소)	

3. 사고사항

사고일시		사고약도	
사고장소			
사고경위			
탑승인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유 (운전자외 명) <input type="checkbox"/> 무	경찰서신고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(경찰서),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고
재해사항	피해자 성명 : 외 명	치료병원	
	피해물 차량번호 : 외 대	수리공장	
	기타 피해물 : 외 건	복구업체	
중대사고 여부	음주 (%), 앞지르기위반,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사고후도주, 횡단보도, 속도위반(km/h)	철길건널목, 보도침범, 개문발차	

4. 보험금 청구 및 위임장

-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귀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합니다.
-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 / 피해물 _____에 대하여 합의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권한 일체를 귀사에 위임하며, 치료비, 피해물 원상복구비, 자차 수리비의 청구권과 영수권을 _____에 위임합니다.

5.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등 비용부담의 주체

보험계약자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.
(보험업감독규정 제9조-16조)

보험계약자등이 부담	-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
	-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보험회사 부담	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부터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
	-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6.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

- 본인은 보험업법 제95조의2(설명 의무 등) 규정에 따라 귀사로부터 사고처리과정(보험금 청구 이후 지급시까지)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상기내용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 서류 또는 증거가 위·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, 보험사기 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피해과장, 운전자 바꿔치기, 음주·무면허 운전 은닉)는 범죄이며, 형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주소		주민번호	
위임일자		위임자	(인)
청구일자		청구자	(인)